

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자 중 귀국에 어려움을
겪고 있는 분에 대한 체류신청 대안에 대해

1 대상자

- ① <특정활동>(5호 및 5호의 2:워킹홀리데이)으로 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이 폐쇄되고 이동에 제한이 생겨 귀국 혹은 본국의 국내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(이하 <귀국곤란자>라고 한다.)
- ② 귀국곤란자에 해당되며, <특정활동>(5호 및 5호의 2: 워킹홀리데이) 체류자격에서 <단기체류>로 비자를 전환했으나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

2 대응

- ① 상기 1 ①에 해당하는 분
계속해서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.
- ② 상기 1 ②에 해당하는 분
귀국할 수 없게 되어 <단기체류>로 비자를 변경한 분 중,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을 별 목적으로 다시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<특정활동>(5호 또는 5호의 2: 워킹홀리데이) 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

3 입증자료

공항폐쇄나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거주지 혹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.

※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체류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.
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<6개월>입니다.